

수수료 부과지침

제정 2016. 06.01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(이하 “관련 법규”라고 한다)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,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,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나. 매입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매입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
다. 매각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
라. 성과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금전

마. 판매보수 :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바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·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사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 운영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아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2. 수수료

가. 판매수수료 :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
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

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여 그 투자자문재산 또는

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4조(수수료의 부과 기준)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 2.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.
 3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, 계산방법,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일임계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(투자일임의 경우 성과 수수료 계산방법 포함)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 절차)

- ①보수 및 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, 포트폴리오의 규모, 요구되어지는 서비스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투자자 기준으로 회사가 결정한다
- ②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보수 및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

제6조(설명의무) 회사는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수료의 인상) 회사는 이 지침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에 정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공시 등)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지침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지침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